

改正된 商標審査基準(完)

3月 14日 改正과 함께 施行

特許廳은 지난 3月 14日 현행 商標審査基準을 일부 改正했다. 현행 商標審査基準은 지난 83年 11月 14日字 改正된 것이었다.

特許廳에 따르면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査基準은 다르이 定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改正日인 3月 14일부터 施行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査基準 施行前, 즉 3月 14日 以前에 한 商標登錄出願은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査基準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從前의 基準에 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改正된 商標審査基準 全文을 3회에 나눠 실는다. 〈編輯者 註〉

〈前號에서 계속〉

11. 法 第18條의 異議申請에

관한 特許法準用

○ 商標法 第18條(特許法準用) 特許法 第81條·第84條 내지 第90條·第93條 내지 第96條의 規定은 商標登錄出願의 審査에 이를 準용한다. 다만, 特許法 第84條 第1項에서 規定한 異議申請의 期間 2月內를 30日內로 한다.

○ 特許法 第84條(特許異議申請) ① 出願公告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出願公告日로부터 2月以內에 特許廳에 特許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特許異議申請은 特許異議申請書를 提出하고 그 理由와 必要한 證據의 表示를 記載하여야 하며 이에 必要한 證據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 特許法 第85條(異議申請 理由의 補正 등) ① 特許異議申請의 理由를 訂正하고자 하는 자는 늦어도 異議申請期間의 경과후 30日以內에 하여야 한다.

② 證據方法의 追加提出期間도 第1項과 같다.

○ 特許法 第86條(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① 特許異議申請이 있을 때에는 審査官은 特許異議申請書 부분을 出願人에게 送付하고 期間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答辯書의 提出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 審査官은 第84條 第1項 및 第85條에 의한 期間經

過後 特許異議申請에 대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84條 第1項의 期間內에 特許異議申請은 있었으나 그 理由 및 證據를 提出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特許異議申請을 決定으로서 却下할 수 있다.

③ 特許異議 決定에는 그 理由를 붙여야 하며 特許廳長은 그 決定의 謄本을 特許出願人 및 特許異議申請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④ 特許異議決定에 대하여는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가. 異議申請期間이 경과한 후에 提出된 證據書類는 原則적으로 認定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異議申請期間 경과후에 提出된 書類는 職權調査의 資料로서 參考하는 것으로 본다.

나. 商標登錄出願에 있어서 2인 이상의 異議申請이 있을 경우에 異議申請이 理由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理由의 全部(異議決定을 한 것이나 아닌 것을 不問함) 또는 一部를 拒絕査定에 引用하는 것으로 본다.

다. 法 第9條 第1項 第7號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서 異議申請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異議申請인이 外觀의 類似한 것만을 主張하였으나 審査를 한 결과 그 外觀에 있어서는 非類似하지만은 稱號 또는 觀念이 類似하다고 認定하였을 때에는 異議申請은 理由있는 것으로 본다.

라. 商標登錄出願인이 異議申請後에 補正할 수 있는 事項은 法 第14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出願의 補正事項”과 같다.』

12. 法 第21條의 商標權의 存續期間 更新登錄의 出願

● 第21條 (商標權의 存續期間 更新登錄의 出願)

① 商標權의 存續期間 更新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商標權의 存續期間 更新登錄願書를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第10條 第1項 第1號 내지 第5號의 事項
2. 登錄商標의 登錄番號

3. 登錄商標가 第20條 第2項 第2號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證明하는 事項(이를 證明할 수 있는 書類를 添附할 것)

② 商標權의 存續期間 更新登錄의 出願은 商標權의 存續期間滿了後 1年內에 出願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出願이 있을 때에는 存續期間은 更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出願에 대하여 拒絕할 것이라는 査定이 確定되었을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④ 更新된 登錄은 原登錄이 끝나는 날로부터 效力이 있다.

⑤ 第1項 및 第2項以外에 商標權의 存續期間 更新登錄出願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21條의2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의 分割)

①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을 할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이 2以上의 商品區分內의 商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指定商品이 속하는 商品區分別로 分割하여 出願하여야 한다.

②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權의 存續期間 更新登錄出願이 2以上의 商品區分內의 商品이 指定商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査定의 通知書를 받은 날로부터 30日內에 그 指定商品에 속하는 商品區分別로 分割 出願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된 商標權의 存續期間 更新登錄出願은 原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時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13條의 2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49條 第2項 및 第3項 또는 第13條의 3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에 있어 商標中 明白하게 不合理한 部分에 대한 補正이나 要旨變更에 해당되지 않는 附記部分에 대한 削除補正은 認定되는 것으로 본다.

나. 商標權의 存續期間 更新登錄出願에 있어 登錄原簿의 權利者 姓名이나 名稱 또는 住所나 營業所 및 出

願人의 表示가 相異할 때에는 登錄原簿의 權利者와 商標權存續期間 更新登錄出願人과는 同一人이 아닌 것으로 取扱한다.

다. 商標登錄原簿의 出願商號表示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商標權의 存續期間 更新登錄出願의 表示가 「……컴파니」등 같은 觀念으로 表記되어 있을 때에는 같은 것으로 본다.

라. 商標權의 存續期間 更新登錄出願에 있어서는 그 指定商品을 登錄된 指定商品의 權利範圍內에서 商品을 具體化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3. 法 第20條 및 第21條의 登錄商標의 使用說明書와 使用事實을 證明하는 證據物에 關한 審査基準

○ 商標法施行令 第2條 第2項에서 特許廳長이 定하기로 한 登錄商標의 使用說明書와 使用事實을 證明하는 證據物에 關한 審査基準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1984年 9月 1日 更新出願부터 적용한다.

가. 登錄商標의 使用事實의 認定에 關한 것

(商標法 第20條 第2項 및 同施行令 第2條)

(1) 登錄商標의 使用事實은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前 3年以內 商標權者 또는 使用權者가 商標原簿에 登錄된 國內의 者이거나 代理人의 住所 또는 營業所의 行政區域內 市·郡(特別市의 경우 區)에서(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가 없는 者로서 그 代理人의 登錄이 없는 경우에는 特許廳 所在地) 그의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에 대하여 使用한 것이어야 한다.

(2) 登錄商標의 聯合商標인 경우에는 登錄商標中 1商標라도 使用하였을 때 또는 登錄商標의 指定商品中 1商品이라도 그 登錄商標를 使用하였을 때에는 그 登錄商標를 使用한 것으로 본다.

(3) 登錄商標의 使用事實에 대한 認定與否判斷을 登錄商標와 同一한 商標를 指定商品과 同一한 商品에 營業을 目的으로 使用한 것일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使用한 商標가 去來社會 通念上 登錄商標와 同一한 商標로 認識될 수 있는 정도의 範圍內에서 文字의 配列을 變更하거나 書體를 變更하는 등의 극히 制限의인 變更使用商標에 대한 認定與否判斷基準과 使用事實(使用方法)을 證明하는 證據物에 대한 具體的인 判斷基準은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에 속하는 業界의 商去來 實情을 勘案하며 各各의 事案에 따라 다음의 例에 의거 判斷하여 서어비스標·團體標章·業務標章의 경우 本基準에 따라 規定하지 아니한 것은 商標에 準하여 適用

한다.

『(1) 正當한 使用으로 認定되는 商標의 事例

(가) 文字로 構成된 登錄商標와 使用商標의 書體에 관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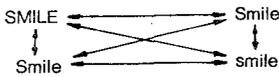
① 同一文字의 同一配列順으로 構成되어 있고 書體를 다르게 表示한 商標 相互間의 使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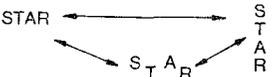
② 同一한 觀念으로 認定되고 있는 漢字의 正字와 略字 또는 俗字로 表示된 商標 相互間의 使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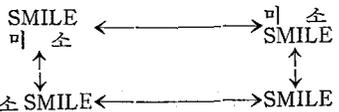
③ 로마文字의 印刷體·筆記體·大文字·小文字로 表示된 商標 相互間의 使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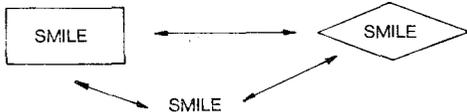
④ 同一文字로서 文字配列(左橫體·縱書體)과 書體를 달리하여 表示된 商標 相互間의 使用



(나) 要部인 두개의 文字가 上下·左右로 結合된 경우 이들의 配列을 달리하여 表示된 商標 相互間의 使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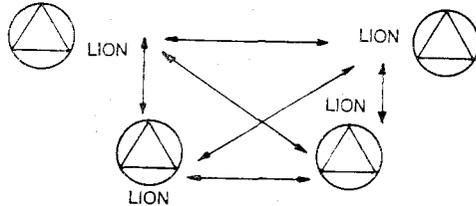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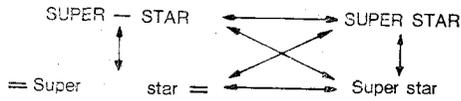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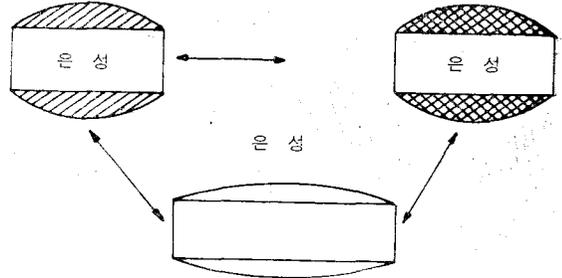


(다) 識別力이 없는 標章(普通名稱·慣用名稱·記號等)과 結合하여 表示된 商標 相互間의 使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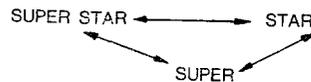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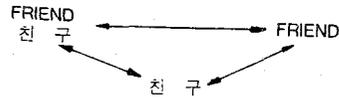
(라) 上記한 “가”號~“다”號 이외의 경우로서 登錄商標와 使用商標가 去來社會通念上 同一한 商標로 認識될 수 있는 정도의 範圍內에서 變更表示한 商標 相互間의 使用

互間의 使用



(2) 正當한 使用으로 認定되지 않는 商標의 事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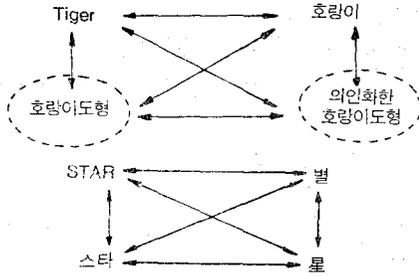
(가) 要部인 두개의 文字가 結合構成된 경우, 그 中 한 要部의 文字를 除外하고 表示된 商標와 이들 商標 相互間의 使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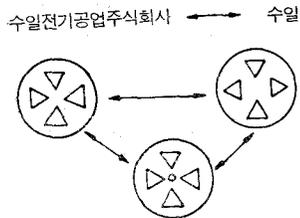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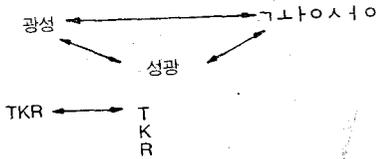
(나) 要部인 文字나 圖形 또는 記號가 結合構成된 경우 그 中 일부를 除外하고 表示된 商標와 이들 商標 相互間의 使用



(다) 觀念이 同一하다 할지라도 稱號나 外觀을 顯著하게 달리하여 表示된 商標 相互間의 使用



(라) 上記한 “가”~“다”號 이외의 경우로서, 稱號·外觀·觀念中 어느 부분을 顯著하게 달리하여 表示된 商標 相互間의 使用. 다만, 圖形으로 구성된 商標의 變更使用은 程度의 過小를 不問하고 正當한 使用으로 認定하지 아니함을 原則으로 한다.』



나. 登錄商標의 使用事實을 證明하는 證據物에 관한 것.

登錄商標를 使用한 商品의 見本을 使用事實을 證明하는 證據物의 최우선으로 認定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商品見本이 아닌 其他 證據物을 提出하였을 때에는 同 證據物을 통하여 商標를 使用한 商標 및 商品이 明瞭하게 判別되고 去來社會에서 營業의 目的으로 使用되고 있다고 認識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認定되는 것으로 하는데, 이들 기타 證據物에 대한 判斷은 다음에 의거 處理한다.

『(1) 商品의 見本인 경우

(가) 商標 및 商品을 明瞭하게 判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商品의 寫眞인 경우

(가) 商標가 부착되어 있는 商品의 寫眞은 商標 및 商品을 明瞭하게 判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商品의 크기에 비하여 부착된 商標가 왜소하기 때문에 商品의 全體 寫眞으로서의 商標를 명료하게 判別할 수

없는 때에는 全體寫眞과 商標가 부착된 部分의 擴大寫眞을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나) 商標가 商品에 부착되지 않고 商品의 包裝이나 容器등에만 表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包裝 또는 容器를 통하여 商標 및 商品을 明瞭하게 判別할 수 있는 寫眞이어야 한다. 다만 包裝 또는 容器 등을 통하여 商品을 明瞭하게 判別할 수 없는 경우에는 商品이 包裝 또는 容器등에 들어있는 상태의 寫眞과 商品만의 寫眞을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다) 商標가 商品에 부착되어 去來되지 않는 特殊한 商品인 경우(例: 저울에 달아서 販賣하는 商品, 날개로 들어서 販賣하는 商品等) 또는 商品價格表·正札標등에만 表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同證據物을 통하여 商標와 商品을 明瞭하게 判別할 수 있고, 營業目的으로 去來되고 있다고 認識될 수 있는 寫眞이어야 한다.

(3) 商品의 카다로그 또는 商品의 廣告物인 경우

(가) 商標가 商品에 附着된 狀態로 表示되어 있고, 商標 및 商品을 明瞭하게 判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上記 “가”의 카다로그 또는 廣告物 그 自體를 提出할 수 없는 경우에는 同 카다로그·廣告物의 複製 또는 廣告物을 撮影한 寫眞과 카다로그 內容을 具體적으로 說明한 使用說明書를 함께 提出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때에 複製 또는 寫眞과 使用說明書를 통하여 商標와 商品을 明瞭하게 判別할 수 있고, 現實적으로 그 廣告物 또는 카다로그가 營業目的으로 去來되고 있다고 認識될 수 있어야 한다.

(4) 商品의 去來書類인 경우

商品에 관한 去來書類(例컨대 納品書·買入賣出書·送狀等)는 商標 및 商品이 明確하게 表示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去來上 實際 使用된 事實을 把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認定하지 않는다.

(5) 서어비스標·團體標章·業務標章인 경우

(가) 서어비스標는 現實적으로 서어비스役務를 提供하고 있다고 認定할 수 있는 證據資料(事業者登錄認許可證明書·廣告資料·事業場所의 寫眞등등)와 그 內容을 具體적으로 說明한 說明書를 함께 提出하여야 하고 同 資料를 통하여 當該 서어비스業을 明瞭하게 判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業務標章은 現實적으로 業務를 經營하고 있다고 認定할 수 있는 證據資料(業務經營認許可證明書·廣告資料·業務經營寫眞등등)와 그 內容을 具體적으로 說明한 說明書를 함께 提出하여야 하고 同資料를 통하여 當該業務를 明瞭하게 判別할 수 있어야 한다.

(다) 團體標章은 이를 商品에 使用하였을 때에는 商標基準에 準하고 서어비스業에 使用하였을 때에는 서어비스標 基準에 準하여 適用한다.

(6) 其他

(가) 上記 (1)號~(5)號에 該當하는 證據物일지라도 同 證據物이 特定人만이 알 수 있는 狀態로 使用되어진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使用에 대한 證據物로 認定하지 아니한다.

例: ○會社構內賣店의 去來書類

○會社職員用 社報에 廣告

○會社構內 揭示板에 揭示등등

(나) 上記 (1)號~(5)號以外的 證據物일지라도 商品이 現實의으로 營業目的으로 去來 使用되고 있는 것으로서 商標 및 商品이 明瞭하게 判明되고 上記 “(2)”~“(4)”號와 같은 使用事實에 대한 證據力이 있을 때에는 이를 認定하는 것으로 한다.

(7) 使用事實을 證明하는 證據物은 다음의 「登錄商標 使用說明書」에 添附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書 式

등록상표 사용설명서

1. 상표등록번호 및 상표기본
2. 상표사용자 주소
상표사용자 성명
상표권자와의 관계
3. 상표를 사용한 상품
4. 상표의 사용시기
5. 상표의 사용장소
6. 상표의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물과 그에 대한 설명

○規 格: 190mm×268mm(인쇄용지 2급 60g/m²)

○作成要領

① 登錄商標를 2以上の 商品에 使用한 경우에는 각각의 商品마다 作成한다. 또한 商標使用者가 2人以上인 경우에도 같다.

② 使用한 商標가 聯合商標인 경우에는 “商標登錄番號”欄 다음에 “聯合商標登錄番號 및 見本”欄을 追加表示하여야 한다.

③ “商標權者와의 關係”는 “使用時期”의 欄에 記載한 時期에 使用한 者를 “本人” 또는 “使用權者”라고 記載한다.

④ “商標를 使用한 商品名”은 具體的으로 表示하여야 한다.

⑤ “商標의 使用時期”欄에는 更新登錄出願時 使用하고 있을 때에는 “現在使用中”이라 記載하고 外의 경우에는 更新登錄出願時로부터 3年以內중 最近 使用時

期를 記載하여야 한다.

⑥ “商標의 使用場所”欄에는 營業所·市場등 地域을 行政區域表示方法에 의거 具體的으로 記載하여야 한다.

⑦ “證據物과 그에 대한 說明”欄에는 寫眞의 경우에는 撮影日字, 撮影者의 住所·姓名을, 商品見本の 경우는 製造年月日, 製造工場 住所와 기타 必要한 事項을, 其他 資料인 경우에는 資料의 名稱, 資料作成日字, 資料作成者의 住所·姓名과 其他 必要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⑧ 서어비스標·業務標章의 경우에는 書式名稱을 變更하여 商標와 같은 要領으로 作成한다.』

다. 商標法 第20條 第2項의 規定에서 商標權者 또는 使用權者가 登錄商標의 不使用에 正當한 理由로 認定되는 範圍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것으로 한다.

『(1) 天災地變에 의한 것.

(2) 他法令에 의한 許可 또는 認可節次의 遲延에 의한 것으로서 그 事由가 許可 또는 認可機關의 事情에 의한 것.

(3) 他法令에 의한 商品의 輸入禁止 및 商標의 使用禁止등에 準하는 것.

(4) 火災·破壞 其他 이에 準하는 것.』

라. 上記에 該當함을 證明하는 證據物을 “登錄商標의 不使用에 대한 正當한 理由說明書”에 添附하여 提出하여야 하고, 同 證據物을 理由가 있다고 判斷될 때에는 認定하는 것으로 한다.

『○書 式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이유설명서

1. 등록상표번호 및 상표기본
2. 상표권자의 주소
상표권자의 성명
통상사용권자의 주소
통상사용권자의 성명
3. 상표를 사용하여야 할 상품명
4.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증거물과 그에 대한 설명

○規 格: 190mm×268mm(인쇄용지 2급 60g/m²)

○作成要領

① “商標를 使用하여야 할 商品名”은 具體的으로 表示하여야 한다.

② “證據物과 그에 대한 說明欄”에는 資料의 名稱·資料의 作成年月日 및 資料作成機關 또는 作成者와 기타 必要한 事項을 記載하면서 不使用에 대한 事由가 正當한 이유에 該當함을 具體的으로 示明하여야 한다.

③ 서어비스標·業務標章·團體標章의 경우에는 書式名·名稱을 變更하여 商標와 같은 要領으로 作成한다.』

14. 法 第34條의 營業廢止

第34條 (商標權의 消滅) 商標權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날부터 消滅한다.

1. 商標權者가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에 대한 營業을 廢止하였을 때.

2. 商標權者가 死亡한 날로부터 1年以內에 相續人이 그 商標의 移轉登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商標登錄出願人이 他人의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 및 그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으로 登錄을 받고자 그 他人의 登錄商標가 營業이 廢止되었다고 主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1) 出願된 商標·指定商品·出願人·出願日字 및 出願番號를 記載한 書面에 營業廢止證明書의 사본을 添附하여 商標權者에게 送付하고 30日內에 答變書와 營業을 繼續하고 있음을 證明하는 書面을 提出케 한다.

(2) 前 第1項의 商標權者가 營業을 繼續하고 있는 證明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出願人이 提出한 證明書의 內容에서 法 第45條 第3項의 規定에 定한 事項을 證明할 수 있을 경우에 商標權者는 營業을 廢止한 것으로 推定하고 出願書의 處理를 進行한다.

(3) 出願公告가 있는 後 異議申請期間內에도 商標權者의 證明 提出이 없을 때에는 그 商標權은 消滅된 것으로 보고 出願에 대하여 登錄査定을 한다.

(4) 前 第(3)項의 登錄査定이 있을 경우에는 商標原簿에 必要한 註書를 記載케 하기 위하여 審査官은 登錄課長에게 그 事實을 通報한다.

15. 法 第2條 第2項의 서어비스標

② 이 法에서 서어비스標라 함은 서어비스業을 하는 者가 自己의 서어비스業을 다른 者의 서어비스業과 識別시키기 위하여 使用하는 標章으로서 特別顯著한 것을 말한다.

가. 서어비스標 登錄의 對象서어비스業은 다음 要件을 具備한 서어비스業이어야 한다.

『(1) 用役의 提供이 獨立하여 商去來의 對象이 될 것.

(例) : 電氣器具製造者가 그 製品의 使用方法을 指導하는 것은 獨立한 商去來를 위한 用役提供이 아닌 것으로 본다.

(2) 他人의 利益을 위하여 提供되는 用役일 것.

(例) : 電氣器具製造會社가 그 會社의 工場間 運送을 위하여 運送手段 및 部署를 設置하고 運送業務를 運營

하는 것은 그 會社 自身의 利益을 위한 企業活動의 일부에 不過한 것으로 본다.

(3) 商品販賣를 위한 서어비스 提供이 아닌 것.

(例) : ① 藥劑師가 處方등에 의해서 藥을 製造하여 販賣하는 경우는 商品販賣에 附隨된 서어비스로서 서어비스標의 對象範圍가 아님.

② 茶房·레스토랑 등에 있어서 料理와 커피의 提供은 支拂하는 대가의 代價가 서어비스 提供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는 商品販賣를 위한 서어비스 提供이 아니고 서어비스에 附隨한 商品販賣로 본다.

③ 당해 서어비스業이 現實의으로 存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서어비스業을 하는 者가 그 附帶業務에 관한 商品에 商標를 使用하고자 할 경우에는 商標로서 別途의 登錄을 認定하는 것으로 본다.』

나. 指定서어비스業의 區分 및 類似與否判斷

① 指定서어비스業의 區分은 商標法 施行規則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따른다.

② 第112類 指定서어비스業의 類似與否判斷은 去來 實態를 考慮하여 原則的으로 業種別로 對比 判斷하도록 한다.

16. 法 第2條 第3項의 團體標章

이 法에서 團體標章이라 함은 同種業者 및 이의 密接한 關係가 있는 業者가 設立한 法人이 그 監督下에 있는 團體員의 營業에 관한 商品 또는 서어비스業에 使用하게 하기 위한 標章을 말한다.

法 第27條 (商標의 移轉) ① 商標는 登錄與否를 不問하고 그 指定商品의 營業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를 移轉할 수 없다.

② 聯合商標는 分離하여 移轉할 수 없다.

③ 商標의 移轉은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 事由를 日刊新聞에 公告하여야 한다.

④ 商標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후가 아니면 移轉할 수 없다.

⑤ 共有인 商標는 共有者 全員の 承諾이 없으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⑥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商標權의 移轉 및 承繼의 效力은 登錄에 의하여 發生하며 商標登錄出願의 商標의 承繼는 出願人 名義變更의 申告에 의하여 承繼한다.

⑦ 第9條 第1項 第3號의 但書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業務標章은 讓渡할 수 없다.

⑧ 團體標章은 讓渡할 수 없다. 다만, 法人의 合併

또는 分割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第8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團體標章을 讓渡하고자 할 때에는 特許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가. 團體標章出願中에 團體標章을 讓渡할 때에는 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名義變更申告에 의하여 承繼되며, 이때 法人의 合併 또는 分割을 證明하는 書面과 申請人의 定款을 提出받아야 한다.

나. 團體標章의 登錄出願 및 名義變更申告時에 提出하는 定款에는 다음 事項의 內容이 包含되어야 한다.

- (1) 團體標章을 使用하는 者의 範圍
- (2) 團體標章의 使用條件
- (3) 前 第(2)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에 대한 制裁에 대한 事項
- (4) 其他 團體標章의 使用에 관한 事項』

17. 法 第4條의 業務標章

① 國內에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를 經營하는 者는 그 業務를 表象하는 標章을 業務標章으로 登錄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② 第1項의 業務標章에 대하여는 이 法中 商標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가. 業務標章의 登錄에 있어서는 그 業務標章이 表象할 業務를 指定하는 것으로 한다.

나. 1973年 12月 31日 이전에 登錄한 標章權의 存續期間 更新登錄에 있어서는 그 「標章」을 「業務標章」으로 그 「指定商品」을 「業務」로 作替하게 한다.

다. 業務標章의 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가 그 附帶業務에 대하여 별도로 商標 또는 營業標의 登錄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認定하는 것으로 본다.』

18. 法 第18條의 審査保留

法 第18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96條에 의거 審査

官이 審査處理期間을 延長하고자 할 때에는 査定判斷이 어렵다고 認定할 수 있는 直接的이고 明白한 理由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適用한다. 다만, 다음 各項에 해당하는 出願商標에 대하여는 審査保留 措置없이 즉시 處理함을 原則으로 한다.

- 『① 審査繫留中인 登錄商標의 更新出願商標
- ② 審査繫留中인 登錄商標의 指定商品 追加登錄 出願商標
- ③ 審査繫留中인 登錄商標의 聯合出願商標. 다만, 取消審査請求後 聯合商標로 出願된 것은 當該 審査의 確定까지 保留한다.
- ④ 無效審査繫留中인 登錄商標과 同一 또는 類似的한 他人의 出願商標
- ⑤ 取消審査繫留中인 登錄商標과 同一 또는 類似的한 他人의 出願商標』

19. 其他 基準

『가. 外國語(外國文字이거나 한글 混用이거나를 不問함)로 된 商標에 대하여는 우리말로 翻譯하여 그 翻譯한 우리말에 대하여 各 條文에 대한 該當與否를 檢討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判斷에 있어서는 去來者 및 一般需要者에 있어서 그 翻譯된 의미로 認識될 수 있는가의 與否를 基準으로 하여 具體적으로 判斷하여야 한다.

나. 商標法施行規則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別表의 商品區分과 類似商品群 및 商品題目은 同一商品區分 또는 同一類似商品群에 속하는 商品을 예시한 것으로 解釋한다.

다. 서어비스標·業務標章 및 團體標章의 審査에 있어서는 이 基準에 따라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이 基準을 類推適用한다.』 <㉞>

■ 아이디어뱅크 개설안내 ■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는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를 發掘하여 이를 實用化될 수 있도록 關聯企業등에 連繫시키므로서 汎國民的인 發明風士를 造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뱅크를 開設하였으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對象: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
- 申請方法: 直接訪問, 書信 또는 電話
- 接受處: 韓國發明特許協會
우편번호 135-080 서울 江南區 驛三洞 814-5 發明獎勵館(TEL: 568-8263)

● 接受된 아이디어의 處理

- 分期別로 審査하여 實用化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關聯企業에 實施斡旋
- 特許·實用新案·意匠으로 設權可能하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出願誘導
- 申請接受된 優秀한 아이디어는 綜合審査後 年末에 施賞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